

작성 방법

1. "② 해당(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란: "㉑(㉓) 상시근로자별 계산한 수"의 합계(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를 적습니다.
2. "④ 해당(직전) 청년 상시근로자 수"란: "㉓(㉕) 청년등 상시근로자별 계산한 수" 중 청년에 해당하는 계산한 수의 합계를 적습니다.
3. "⑤ 해당(직전) 장애인 상시근로자 수"란: "㉓(㉕) 청년등 상시근로자별 계산한 수" 중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산한 수의 합계를 적습니다.
4. "⑥ 해당(직전) 고령자 상시근로자 수"란: "㉓(㉕) 청년등 상시근로자별 계산한 수" 중 고령자에 해당하는 계산한 수의 합계를 적습니다.
5. "⑦ 해당(직전) 경력단절근로자 상시근로자 수"란: "㉓(㉕) 청년등 상시근로자별 계산한 수" 중 경력단절근로자에 해당하는 계산한 수의 합계를 적습니다.
6. "⑧ 해당(직전) 북한이탈주민 상시근로자 수"란: "㉓(㉕) 청년등 상시근로자별 계산한 수" 중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계산한 수의 합계를 적습니다.
7. "⑨ 해당(직전) 합계"란: "㉓(㉕) 청년등 상시근로자별 계산한 수"의 합계(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와 같아야 합니다.
8. "⑭(㉖) 상시근로자 제외 사유"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해서 적습니다.
 - "⑬(㉓) 상시근로자"란에서 'N'을 선택한 경우 제외 사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를 적습니다.(㉑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㉒단시간 근로자, ㉒법인의 임원, ㉒최대주주(출자자) 및 그 친족, ㉒원천징수사실 미확인 근로자 등, ㉒기타)
9. "⑮(㉗) 단시간근로자유형"란: 단시간근로자 중 ⑬(㉓)상시근로자가 'Y'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가. 해당 과세연도의 월 평균 근로시간(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전 과세연도에 대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0.5
 - 나. 가목의 단시간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1항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0.75
 * 단시간근로자: 1주동안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해 짧은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10. "⑯(㉘) 내국인"란: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주(居所)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국적 무관)
11. "⑰(㉙) 수도권근무지"란: 해당 근로자의 근무지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인 경우 Y로, 그 외의 경우 N으로 적습니다.
12. "⑳(㉚) 상시근로자 근무개월수"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제6항에 따른 해당 상시근로자의 근무개월수(단시간근로자 유형의 경우 $0.5(0.75) \times$ 근무개월수)를 적습니다.
13. "㉑(㉛) 상시근로자별 계산한 수"란: "㉑(㉚)상시근로자 근무개월수"를 "① 해당(직전) 과세연도 개월수"로 나눈 값을 적습니다.
14. "㉒(㉜) 청년등 상시근로자 근무개월수"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제6항에 따른 해당 청년등 상시근로자 근무개월수를 적습니다.
15. "㉓(㉝) 청년등 상시근로자별 계산한 수"란: "㉒(㉜)상시근로자 근무개월수"를 "① 해당(직전) 과세연도 개월수"로 나눈 값을 적습니다.
16. "㉔(㉞) 과세연도 기준 청년여부"란: 해당 연도에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군필자는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17. "㉕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청년여부"란: ⑬근로계약 체결일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군필자는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18. "㉖ 청년 제외시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제4항제1호에 따라 청년에서 제외되는 경우 최초로 청년에서 제외되는 일자를 적습니다.
예시) 생일이 1990년 5월 28일인 직원(군미필)의 근로계약 체결일이 2025년 4월 1일인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 당시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해당 칸에는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또는 2년이 지난 20280401 또는 20270401을 적습니다.
19. "㉗(㉟) 장애인"란: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20. "㉘(㊱) 고령자"란: ⑬(㉑)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21. "㉙(㊲) 경력단절근로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2항에 따라 퇴직 전 1년 이상 근무, 결혼·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22. "㉚(㊳) 북한이탈주민"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합니다.
23. "㉛(㊴) 육아휴직 복귀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5항에 따라 근무기간 1년 이상, 육아휴직기간 6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말합니다.
24. "㉜(㊵)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청년여부"란: 2024년 이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청년여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N"을 적습니다.
25. "㉝(㊶) 청년 제외시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제4항제1호(근로계약체결일 기준 청년간주 개정규정은 미적용)에 따라 청년에서 제외되는 경우 최초로 청년에서 제외되는 일자를 적습니다.
예시) 생일이 1990년 5월 28일인 직원(군미필)은 2025년 5월 27일까지 청년이고 2025년 5월 28일부터는 청년이 아니므로 해당 칸에는 '20250528'을 적습니다.